KOSHA GUIDE C - 14 - 2012

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2012. 8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안전학회 박종근
- 제·개정 경과
- 2011년 6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2년 7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BS: confined spaces regulations 1997 (SI 1997, L101)
- BS: safe work in confined spaces (BS guidance INDG-258, L101)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, 제296조
- 산업보건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~ 제34조, 87조 ~ 96조
- KOSHA GUIDE H-80-2012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 지침
- KOSHA GUIDE W-1-2012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
- KOSHA GUIDE H-57-2012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
- KOSHA GUIDE H-59-2012 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
- KOSHA GUIDE X-25-2012 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 지침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8월 2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C - 14 - 2012

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밀폐공간에서 아스팔트, 에폭시, 시멘트모르타르, 합성수지 등 인 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산소결핍증 및 질식으로 인한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"밀폐공간"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산소결핍,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.
- (나) "산소결핍"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%미만인 상태로서 신체적 증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.
- (다) "유해가스"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메탄, 탄산가스, 황화수소,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.
- (라) "산소결핍증"이라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마심으로서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구토,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을 말한다.

KOSHA Guide C - 14 - 2012

- (마) "적정한 공기"이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% 이상 23.5% 미만, 탄산 가스의 농도 1.5%미만, 황화수소의 농도 10ppm미만과 같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유해가스가 건강장해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구성된 공기를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시 작업안전절차



<그림 1>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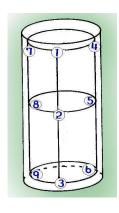
KOSHA Guide C - 14 - 20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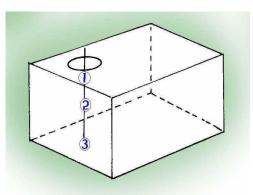
4.1. 작업전 안전절차

(1) 사전조사

- (가)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.
- (나) 출입구 구조, 승·하강 설비, 조명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다)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 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.

측정가스	기준농도
산소(O ₂)	18% ~ 23.5%
탄산가스(CO ₂)	1.5% 미만
황화수소(H ₂ S)	10ppm 미만
 가연성가스	하한치 10% 이하





- (라) 방수재료의 구성성분과 물성 및 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마) 밀폐공간의 방수작업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여야 한다.
- (바) KOSHA GUIDE H-80-2012 (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)에 의한 작업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.

(2) 작업안전계획 수립

(가)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인 배치 계획 및 작업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C - 14 - 2012

- (나)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등의 연락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.
- (다) 밀폐공간의 방수안전 작업방법, 응급처치 등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.
- (라) 대피용 기구의 비치(공기호흡기, 송기마스크, 휴대용랜턴, 무전기) 및 구 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마)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의 측정장소, 측정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바)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환기량은 KOSHA GUIDE W-1-2012 (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) <별표1>을 참조하여 적정한 필요 환기 량을 산정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사) 환기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-80-2012 (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)을 참고한다.
- (아) 작업 전 및 작업 중 유해가스를 조사하여 유해가스의 처리방법·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자) 방수재료, 자재 등 운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차)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점검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.
- (카) 작업의 높이에 따른 이동식비계 등 작업발판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타) 전기기계·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파) 작업장 내 승·하강 설비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C - 14 - 2012

- (하) 가스검지기 및 경보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거)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(3)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

작업자는 밀폐공간 방수작업 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(가) 작업개요
- (나)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유무
- (다) 산소농도측정 유무
- (라) 유해가스 부위별 측정 결과
- (마) 환기설비 설치 유무
- (바) 연락설비 구비 유무
- (사)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유무
- (아) 방폭용 전기기계·기구의 사용 유무
- (자) 소화기 비치 유무
- (차) 호흡용 보호구 비치 유무
- (카) 사고발생시 대응조치 계획
- (타) 조명 설치 계획
- (파) 안전교육 실시
- (하) 안전통로 확보

4.2. 작업 중 안전절차

(1) 일반사항

- (가) 작업 전에 작업장 내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기준 농도 이하가 되도록 환 기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나)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% 이상 23.5%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C - 14 - 2012

- (다) 작업장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, 개인보호구 수시 점검 및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.
- (라) 밀폐공간 작업장의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,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치하되 배출된 유해한 공기가 다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 작업장 내 공기를 적정한 공기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(마)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,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바)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(사) 밀폐공간에서의 방수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(아) 작업장 출입구 및 내부에는 작업에 알맞은 조명(150lux 이상의 조도)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자) 밀폐공간에서 자재를 반입 및 반출시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차) 방수재료인 신나, 방수재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소에 점화물질 휴대를 금지하여야 한다.
- (카) 화재·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타) 방수에 사용하는 도료, 신나 등의 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를 파악하여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.
- (파) 작업 중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하) 투입인원 및 퇴장인원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.

C - 14 - 2012

(2) 작업중 안전조치 사항

- (가) 작업 중에 산소농도의 지속적 측정으로 산소농도 결핍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나) 작업 중에 수시로 유해가스 상태를 점검하고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추가 환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다) 작업 중에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.
- (라)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으로부터 2.5미터이상의 승강사다 리를 이용하여 승·하강 시에는 안전대 및 구명줄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마) 이동식비계 사용 시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바) 밀폐공간 내 벽체, 천정 방수작업 시 작업발판,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사) 손수레 등으로 자재를 소운반 할 때에는 무리한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.
- (아) 작업 전에 작업장의 자재를 정리·정돈하여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자) 전기기계·기구 사용시 합선 및 과부하에 의한 전기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.
- (차) 핸드그라인더, 조명등 전기기계·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및 접지가 되어 있는 분전반에서 인출하여야 한다.
- (카)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폭형 전기기계·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타)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C - 14 - 2012

4.3. 작업완료시 안전절차

- (1) 작업종료 후 인화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계·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완료 후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
5. 구조 및 응급처치

- (1) 보호구, 응급구조체계, 구조장비, 통신장비 구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.
- (2) 비상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구조자는 공기호흡기, 구명줄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응급장비(인공호흡기, 인공호흡 마스크 등)을 지참하여야 한다.
- (4) 인근지역의 119 또는 응급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, 응급처치 및 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응급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는 KOSHA GUIDE H-59-2012 (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)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(6) 응급기관이 도착하였을 때 신속한 구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폐공 간의 특정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(7) 응급처치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-57-2012 (현장 응급 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)과 KOSHA GUIDE H-59-2012 (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)을 따른다.
- (8) 밀폐공간에서의 구조방법은 KOSHA GUIDE X-25-2012 (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 지침)을 참조한다.